

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94. 3. 18

조례정비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우승기 내무위원장의 11인
- 나. 제출일자 : 93. 12. 7
- 다. 회부일자 : 93. 12. 23
- 라. 상정일자 : 94. 3. 18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동정자문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인구비례와는 구분없이 위원정수를 동일하게 25인이내로 구성함으로써 동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함에 있어 많은 주민을 참여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동정의 주요시책사항에 대하여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 자문에 응함.
- 위원구성은 인구 1만미만인 동은 15인~20인 이내, 인구 1만이상인 동은 20~25인이내로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25인이내로 조정 통일(제3조 1항)

3. 전문위원 설명요지

동정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인구비례(1만 미만동 : 15~20인이내, 1만 이상동 : 20~22인이내)에 따라 구성토록 하던 것을 일괄 25인이내로 하도록 개정하여 동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토록 하였습.

4. 토론요지

현재 구성된 각 동의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도 없지 않으므로 많은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한 만큼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

5. 수정안요지

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.

7. 첨부 :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과 인구 1만명미만인 동은 15인~20인이내,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은 20인~25인”를 “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 3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과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~20인이내</u> 인구 1만명이상인 동은 20인~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(생략) ③ (생략)	제 3 조(구성) ①	<u>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</u>
		②	(현행과 같음)	
		③	(현행과 같음)	